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1672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이성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1. 2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7. 29. 접수 제20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의류를 공급해 오던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35,000,000원에 이르자 2012. 12. 4. C과 사이에, 대여금 35,000,000원을 2013. 12. 31.과 2014. 12. 31. 각 17,500,000원씩 변제받고, 이자는 2014. 1. 1.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2년 증서 제10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9. 7. 29.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여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7. 29. 접수 제2093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있었으므로, 위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채권은 원고가 C에게 상표법 위반 의류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으로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C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과 C은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율과 변제기 등을 새로이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 실질이 경계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여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여 그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C에 대하여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바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피고의 아버지인 E이 C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에 불과하여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만 대물변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보람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전 1611㎡

중 C 명의 1/2지분. 끝.